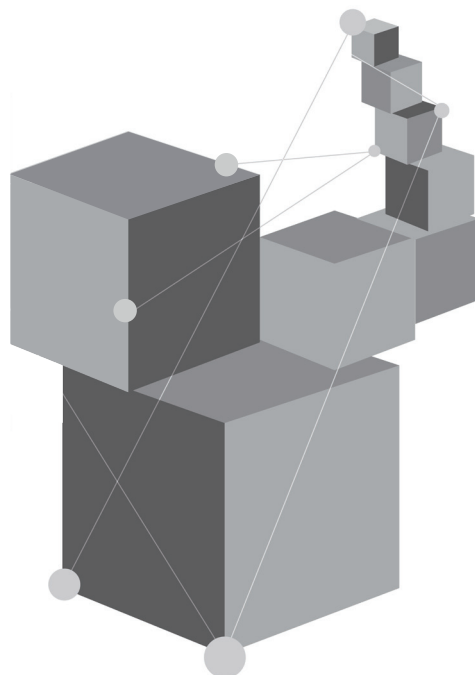


보도와 평론



▲ 2012-1055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주 문〉

서울경제 2012년 4월 11일자 5면 「초·중·고교 졸업 토박이론 앞세워 전·현 의원 등 4자 대결서 차별화/철전 벌이는 여성 신인 중랑갑 서영교 민주 후보」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4·11 총선에서 서울 중랑갑 지역에 나선 서영교(47·사진) 민주통합당 후보를 보면 신인 같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국회의원선거에 처음 나서지만 그의 행동은 어디서든 거침없고 당차다. 연설 마이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우렁찬’ 목소리와 그의 거침없는 성격은 그래서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계속된 선거운동에 지쳐있을 법도 한데 선거를 하루 앞두고 만난 그는 여전히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김정 새누리당 후보와 이 지역 현역 의원으로 새누리당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정현 후보, 민주통합당에서 공천 탈락한 이상수 무소속 후보 간 4자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는 자신감이 그의 말에서 배어 있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는 19대 총선 투표일인 4월 11일자 신문에 게재한 위 기사에서 서울 중랑갑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서영교 후보를 특별한 계기도 없이 돋보이게 소개했다.

중랑갑에는 서 후보를 비롯, 현직 의원인 새누리당 김정 후보와 무소속 유

정현 후보, 전직 의원인 무소속 이상수 후보, 그리고 무소속 강경환 후보 등 모두 5명이 출마했다.

그런데도 위 기사는 서 후보만을 인터뷰 대상으로 삼아 <4자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는 자신감이 그의 말에서 배어 있었다>는 등 서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일관했다.

이 같은 기사는 형평성과 불편부당성이 특히 강조되는 선거 관련기사의 보도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03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문〉

경향신문 2013년 1월 14일자 12면 「양삼승의 개혁이나, 김현의 이익 대변이나/오늘 변협회장 첫 직선 … 위상 갈림길에」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인권단체에서 이익단체로 성격이 바뀌어온 대한변호사협회가 ‘진로’를 되돌릴 것인지가 14일 결정된다. 사회 발언권을 회복해 인권단체로 거듭날 것인지, 아니면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이익단체 성격을 더욱 강화할 것인지가 이날 정해진다.

전국 1만2000여명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첫 직선제 대한변협 회장 선거는 사법개혁을 포함한 사회변화를 주장하는 판사 출신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66)와 변호사들의 복지 강화를 주장하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57)의 맞대결 양상이다.

양삼승 후보의 핵심공약은 사법개혁이다. 우선 대법관을 50명으로 늘리라는 입장이다. 대법관 1명이 매일 10건 넘게 판결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본다. 헌법 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한다는 것이다. 검찰권 제한에도 적극적이다. 현재 무제한으로 가능한 피의자 소환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검찰이 아닌 국민들이 특정 사안을 형사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배심제도’ 도입도 주장해왔다. 다양한 사회계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함께 사법시험을 병행하자는 것도 그의 주장이다.

김현 후보의 공약은 ‘변호사 일자리 늘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김 후보는 최근 유세에서 “직접 발로 뛰고 실천하며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가 있어야만 하는 강제주의, 중앙부서와 280개 지자체에 법무담당관제를 설치토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소송 수행자격을 변호사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서울 변희장 시절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 변호사를 채용토록 하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성공시켰다.

새 정부와의 관계도 관심사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사법 분야에 관해 별다른 공약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개혁과 함께 대법관 수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양 후보는 당선될 경우 새 정부의 사법개혁에 힘을 보태겠지만, 때때로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은 있다. 김 후보는 법률시장 개방을 놓고 정부와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고 법률시장이 개방되는 어려운 현실에 맞서 회원들의 고통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판세는 양삼승·김현 두 후보의 박빙 승부로 점쳐지고 있다. 초반에는 김 후보가 우세했다가, 후반부터 양 후보가 상승세라는 것이 법조계 주변의 예측이다. 지지율 변동은 양 후보가 주도하고 있다.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온 화우의 이미지에 젊은 변호사들이 모이고, 이를 견제하려 나머지 후보들이 과거 전력을 비난하는 식이다. 김 후보는 지난달 공식 선거가 시작되자 “양 변호

사가 과거 대전 비리에 연루됐고, 전두환 정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근무했다”고 비난했다. 최근에는 또 다른 후보가 이런 내용을 주장하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에서 제재를 받았다. 선거홍보 이메일이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다. 이에 대해 양 후보는 “18년 전에 고교 동문 모임에서 후배에게 회식비를 받아 지불한 것이며, 국보위 파견은 공무원으로서 인사명령에 따라 4개월 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삼승·김현 두 사람 외에 오욱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53), 위철환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55)이 후보로 나와 있다. 2년 임기의 47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 결과는 14일 당일 나온다. 유효 투표수 3분의 1 이상을 받아야 당선된다. 해당자가 없으면 상위 1·2위를 상대로 결선투표를 한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지난 1월 14일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면면과 선거전 양상을 소개한 당일자 아침 신문 해설기사다.

변협 사상 처음으로 전국 변호사 1만2000여 명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한 이번 선거에는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오욱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위철환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등 4명이 출마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기사 대부분을 양 변호사와 김 변호사를 소개하는데 할애했고, 오 회장과 위 회장은 기사 뒷부분에서 출마했다는 사실만 달랑 알리는데 그쳤다. 사진도 양 변호사와 김 변호사의 얼굴 사진만 실었다.

기사가 양·김 두 후보 만을 부각시킨 것은 기사에 나와 있는대로 『판세는 양삼승·김현 두 후보의 박빙 승부로 점쳐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사는 왜 양·김의 맞대결 양상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초반에는 김 후보가 우세했다가, 후반부터 양 후보가 상승세라는 것이 법조계 주변의 예측』이라는 소개만 곁들였을 뿐이다.

하지만 기사의 이같은 분석과 예측과는 달리 실제 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31%, 위 후보가 27.8%의 득표율로 결선에 진출했고, 양 후보는 21.3%, 오 후보는 19.3%를 득표해 탈락했으며, 1월 21일 결선투표에서는 위 후보가 당선됐다.

다른 신문들의 관련 기사들은 위철환 후보는 서울 이외 지방변호사회들의 단일후보, 오욱환 후보는 현직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이라는 사실을 강점으로 꼽으며 양·김 후보와 비슷한 분량으로 소개했다.

경향신문은 공정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선거 기사를 편견이나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선부른 예측에 얽매어 불공정하게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기사는 보도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